

박형준 / 5월+6월 / 기출GS / 8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562389	18.5	12	17	12	59.5	1	2.50%	5	40
562188	16	12	16.5	12.5	57	2	5.00%	4	
562576	16	11.5	16	11.5	55	3	7.50%	5	
563199	15.5	12	17.5	9	54	4	10.00%	5	
565042	15	12	15	11	53	5	12.50%	4	
565364	15	10.5	16	11	52.5	6	15.00%	4	
563528	14.5	10.5	16.5	9.5	51	7	17.50%	4	
565337	14.5	10	14.5	12	51	7	17.50%	4	
562578	14.5	10	15.5	10.5	50.5	9	22.50%	4	
563443	14.5	11.5	14.5	10	50.5	9	22.50%	5	
563002	14.5	9.5	16	10	50	11	27.50%	4	
561602	15	9.5	13	11.5	49	12	30.00%	4	
562227	15.5	10	14	7.5	47	13	32.50%	5	
564844	14.5	9.5	12.5	10.5	47	13	32.50%	4	
562508	14.5	10.5	14.5	7	46.5	15	37.50%	4	
565128	15	12	15	4.5	46.5	15	37.50%	4	
562434	15.5	10	14.5	6	46	17	42.50%	5	
563344	15	10.5	12.5	8	46	17	42.50%	4	
562350	16	10	12	7.5	45.5	19	47.50%	5	
563441	11.5	9	15	10	45.5	19	47.50%	4	
562813	14	10.5	14	6.5	45	21	52.50%	3	
562403	11	11.5	10.5	11	44	22	55.00%	4	
562305	13.5	9.5	13	7.5	43.5	23	57.50%	5	
562342	12	9.5	11	11	43.5	23	57.50%	3	
563311	15	8.5	12	8	43.5	23	57.50%	4	
562176	10	9	12.5	11	42.5	26	65.00%	3	
562189	14.5	8	12	8	42.5	26	65.00%	4	
562783	13	9	11	9.5	42.5	26	65.00%	4	
562397	15	10.5	12.5	3.5	41.5	29	72.50%	4	
565263	15.5	10	12	3.5	41	30	75.00%	3	
562408	13.5	11.5	10.5	4.5	40	31	77.50%	5	
563029	10.5	8	13.5	8	40	31	77.50%	4	
565351	11.5	9.5	16	3	40	31	77.50%	5	
562358	13.5	10	9.5	5.5	38.5	34	85.00%	5	
562924	14.5	11	8	4.5	38	35	87.50%	4	
562326	9.5	6	10.5	11	37	36	90.00%	4	
563195	12.5	8.5	12	3.5	36.5	37	92.50%	4	
565403	9	9	13.5	5	36.5	37	92.50%	3	
564269	12	7.5	7	3	29.5	39	97.50%	4	
562349	14.5	10	3	0	27.5	40	100.00%	5	

박형준/5월/기출GS/8회/1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안녕하세요. 박형준 특허법 기출GS 채점을 맡은 박수홍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회차가 되었습니다. 4주간의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특허법의 러프함에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 1번은 공동발명 관련 논점이었습니다. 대부분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은 공동발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논점으로서 판례와 함께, 갑, 을, 병에 대해 각각 포섭해주시면 됩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을과 병에 대해 실질적인 상호 협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 공동발명이 아니라고 작성하였다고 하여 크게 감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렸는데, 이에 대해 논의가 있으나(준특허각주에 있습니다),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로 정리했었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갑이 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고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 및 묵시적 이전 여부에 대해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동발명 논점에서 묵시적 이전 가부 관련 판례 잘 정리해 오실테니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설문 3 설문 3은 특허권 공유 시 지분 비율에 대한 논점이었습니다. 지분 비율은 별도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민법에 의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논리흐름을 잘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설문 4

설문 4는 특발권의 승계에 대하여 정과 ‘무’의 조치를 각각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을의 특허권은 무권리자 출원이었다는 점에서 하자가 존재하고 무는 해당 특허권을 양수한 바 해당 하자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정은 이에 대한 조치로서 템플릿으로 준비해둔 통공정신청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 의 조치는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의 조치를 놓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정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무 효심결 확정시 중용권과 이전등록 청구시 103조의 2에 따른 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소결

공동발명은 곧 특발권의 공유 및 특허권의 공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출 제될 수 있는 논점들이 다양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각 내용들에 대한 유기적인 이 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준/5월/기출GS/8회/2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2번은 일사부재리 및 중복심판청구금지 논점이었습니다. 관련 판례들이 두껍기 때문에 판례 잘 현출해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들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은 일사부재리 여부, 중복심판 여부 각각 대목차로 나눠 검토해주시는 것이 가장 가독성이 좋았습니다. 판단시점에 대해 판례들 잘 작성해주시고, 동일 사실도 아니라는 점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본안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해주신 경우 인상이 더 좋았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심판청구권 남용 관련 논점으로서, 민사소송에서는 기판력의 법리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일사부재리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긴 하나, 사안에서는 무효사유가 상이하기 때문에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흐름으로 작성해주신 경우가 가장 좋았습니다. 3. 소결 비교적 친숙한 논점이라 많은 분들께서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잘 준비된 논점이 출제될 경우 욕심을 부리다가 오버페이스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3번 4번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간 관리 잘 하시면서 답안 작성해야 한다는 점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준/5월/기출GS/8회/3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3번은 직접 침해 및 간접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로서, 프린트 카트리지 사건을 모티브로 출제된 문제였습니다.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침해를 검토할 때는 행위를 개별적으로 뜯어서 검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1은 병의 구입 및 사용 행위가 침해인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구입은 실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가정적 실시라는 점에서 업으로서의 실시를 결여했다는 점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다들 잘 작성해주셨습니다. 설문 1-2도 잉크의 구입 및 충전, 그리고 잉크카트리지의 사용에 대해 검토할 때, 잉크 충전이 전용품의 생산으로 볼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업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직접침해 개연성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접침해가 아니라는 논리로 작성하신 경우 가장 인상이 좋았습니다. (2) 설문 2 설문 2는 잉크젯프린터에 대한 구입 및 사용행위, 잉크 카트리지의 구입 및 교체행위에 대해 검토해주셔야 하는데, 잉크프린터의 사용의 경우 권리소진이 되지 않는다는 점, 카트리지 교체의 경우 수리/재생산 법리를 강하게 작성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행위들을 누락하신 답안이 많았습니다. (3) 설문 3 설문 3의 경우 잉크카트리지의 판매 및 수입행위에 대해 검토해주셔야 하는데, 전용품인지 여부에 대해 판례와 함께 사안포섭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국제적 소진의 경우 갑과 무관한 자로부터 수입하므로, 적용 여지가 없으나, 언급해주신 경우 추가 점수 드렸습니다.	

3. 소결

해당 프린트 카트리지 판례 역시 비교적 친숙했던 논점이긴 하나, 논점을 놓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수리/재생산 법리와 소모품 관련 판례는 같은 사안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세트로 기억해주시고, 누락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준/5월/기출GS/8회/4번	채점자
	박수홍
1. 전반적인 총평 문제 4번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는 산수 문제입니다. 해당 유형의 경우 그 답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득점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답을 틀린 경우 배점을 크게 깎아 채점했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설문 1의 경우 128조 5항에 따라,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20억이라는 답이 나와야하고 그 과정에서 일반론을 거의 작성하지 못하였더라도 답 점수를 크게 드렸습니다. (2) 설문 2 설문 2의 경우 128조 4항에 따라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5만개에 15만원을 곱한 7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해당 금액은 잘 계산해주셨으나, 최대 일실이익이 60억이라는 복멸 논리에 대해 작성하신 분들의 경우 추가적으로 점수 드렸습니다. (3) 설문 3 설문 3은 128조 2항 1호 및 2호 금액을 개별적으로 실수 없이 계산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규정은 계산 과정이 꽤 복잡하므로 실수를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1호 금액, 2호 금액을 각각 정확하게 계산했는지, 최종 금액이 맞는지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여했습니다. 3. 소결 해당 유형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답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많은 연습을 통해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 당일의 긴장으로 인해 실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산으로 답을 꼭 맞히셔야 합니다.	

4주간 특허법의 러프함에 많이 당황하시고 어려우셨을텐데 마지막까지 답안 작성 잘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이렇게 기출문제 1회독 후, 논점의 누락 및 이탈이 발생한 문제들을 모두 체크해놓고, 해당 문제들 대상으로 목차잡기 2회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조치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만의 템플릿을 만들어서 포스트잇에 정리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사람마다 얻어가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6월이 다가온 이 시점에서 꼭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공부를 본인만의 페이스대로 잘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문제-1

1 설문 1)

1 문제점 - 공동발명가 여부 - 33조 2항

특허 발명을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특허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甲, 乙, 丙 관계를 살펴본다.

2 공동 발명 판단 기준 위시제

[객관적 기준] 특허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 했는지 판단 한다

[주관적 기준] 발명자의 의사를 위해 상호 협력을 하였는지 판단한다.

3 甲, 乙, 丙 관계 판단 - 2조 2항 공동발명가

(1) 甲 - 기여 없음

X 관련하여 乙와 계약만 하고 Y관련 단순 아이디어만 제공 하였다

(2) 乙 - X 관련 기여

乙은 관련분야에 대해 3성급 X에 실질적 기여 했다

(3) 丙 - Y 관련 기여

丙은 관련 특정 장치 개발을 Y에 실질적 기여 했다

(4) 소결 - 乙과 丙의 상호협력으로, 乙과 丙이 공동발명가

乙과 丙은 甲을 통해 상호협력으로 서로 공동 발명했다



II 설문1)

35

1 Y의 특허적 귀속 주제 - 甲甲은 완전 특허 권리 Y 발명자로 특허적 귀속 주제이다.2 Y의 리본 설계로 인한 특허적 귀속 주제 - 甲과 乙.(1) 특31조 1항 디디 취지

사적 권리 원칙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전 가능하다.

(2) 명시적 귀속 이전 여부 (조3)

제 2 계약에 유언 포함되지 않고 있다.

(3) 특4조 리본 이전 여부 (조3)1) 특4조 리본이전 가능 위시제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명시 뿐만 아니라
특4조에도 이전 가능하다2) 특4조 리본이전 고려요소 위시제특4조22에 따른 리본이전 요건은 발명, 관계, 출원명과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3) 사안적 정황 - 특4조 이전 (인정)甲과 乙은 개발 약속 안했기만. 甲은 개발과 과제
아이디어와 명명 개발 과정 전반적 항으로 이전 인정된다3 결론 -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 가능특38조 1항에 따라 출원 없이 이전 가능하다

Ⅲ 실문 8)

3

1 특허법상 규정 - 복제

특허법상 규정을 리본이 특정 관련 문제 않는다

2 민법상 규정 - 원법 262조 2항(1) 추심 - 권등

공자의 리본은 권등 한 권으로 특정 한다

(2) 복제 배제 - 가능공자가 리본이 권등하기 안함은 증명한 것 권등 리본
추심은 복제 한다3 민법상 규정 적용 가능 배제특허법상 권등을 공자가 한 것 성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상 권규정을 도입한다.4 사안의 경우(1) 원칙 - 권등추심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무과 제의 리본은
권등 한 권으로 특정 한다(2) 예외 - 리본배출 증명~~특수 3은 무이 리본 배출은 증명하는 권으로 권등~~
리본 복제 가능 하다

Ⅳ 실문 4)

1 戊 特許의 하가 검토 - 法332 1항 본

(1) 法332 1항 본 의의 권리

경쟁권 권리가 보호를 위해 특허 발명권 있는 권리가만 출원된다.

(2) 중간 양자인 관할 위계제

특허를 받은 후 있는 권리를 양도한 양도인은
특허권이 이므로 특허권이 출원된 후로 사지가 클게 한가
고 한가

(3) 사안여 경우 - 2이 무관리자로 출원특허청장

2은 제 2 제약으로 인한 양도인으로 2이 출원한
X는 특허권자로 인한 하가 있는 특허 이다.

2 J의 권리

(1) 무관리가 특허의 권리

선출권 권리 가지는 없고 특허권 선출 가지는 있으나
경쟁권리가 이 제 법다. 권리 가지는 권리로 받는다.

(2) 조1① - 동상 출원 (조3)

2019. 07.30 공리로 인하여 X의 생성 부동으로
인해 동상 출원 보한다.

(3) 조1② - 공리예외 주장 출원 (조3) - 法303 1항 2호

法303 1항 2호로 의사에 대한 권리 다만 공리날
2019. 07.30 으로부터 1년이 경과 있다.

(4) 3조 ③ 장당 권리가 출원 - 조 353 (각각)

1) 사권적 3조 - 무효심판 - 조 1332

[각부] 조 1332 1항 괄호시 J은 장당 권리가 있고

[본안] 戊 출원에는 조 332 1항 본 라가 있다

[임금채무]은 합인 J에게 존재한다

2) 소설

무효심판 결정 발효 후 30일 이내에 장당 권리가
존재하는가 여부를 판단

(4) 3조 ④ - 이권충족 실행 (각각)

(가) 다의 합인 J은 이권충족 실행으로 기본이
된 채능 하라 (조 913 1항).

(5) 3조 ⑤ - 이권충족 실행 (각각) 조 913 2

장당 권리가 J으로 외생재산권에 X에 대한
이권충족 실행권이 인정된다.

3 J이 장당 권리가 여부 (각각) ^{충사.} _{조 913 2}

(1) X의 출원 기록 조 332 - 2

조 332 1항 본 라가 X를 발명한 자에게
발한 후 장당 권리가 인정된다

(2) 제 2 계약에 따른 기록 조 332 - 甲

조 332 1항과 조 382 1항에 따라 2과 甲의
계약으로 X 권리가 무에게 존재한다

(3) 제 1계약 이 따른 권리 귀속 문제 - J

아무도 출원하지 아니 하여 J이 게 귀속 된다

(4) 소결 - J 출원한 권리가

J은 X 특허의 주장 한 권리가 아니라

4 戊의 권리

(1) J에게 대한 가부 (13)

1) 법 383 1항 3가 관련 위수제

관련 연조인 관련 위수제에서 특허 연조인 3가지

(법 383 1항에 관련된 제3자가 아니라고 했다)

2) 사안과 결구

戊는 특허권자 인 특허 연조인 3가지 관련

3가 가 대해 82 대한 조항

(2) 실수권 주장 가부 (15)

1) 무효심판 인용 확정시 - 무효권 법 104조

관련권리가 원심에 대해 무효권 한변과 무효권이

인용된 때 비록 특허 주장 가부하다

2) 이전등록 후 확정시 - 이전등록심판 법 103-2조

J이 이전 등록 후 하여 확정된 이전등록 때를

실수권 가부 하다

(3) J에 대한 계약 수행임

J에게 계약 상 행위요 대상 청구 가능 하다

문제-2

I 실문(1)

1 문제점- 부의 그와 무효한 조치 - 조 133조

부의 그와 무효한 조치 판권하여 일4부 대법원
공부 심판은 살킨다

2 각부①- 일4부대법원 판권 여부 (조 133)

(1) 일4부 대법원 판권 - 조 133조.

(심판 정제와 재판 동일으로 사법 본안 심판 확정적 수권
권한 사권 판결 권리 대법원 보한다

(2) 권리

① 본안 심판 확정적. ② 공판심판 ③ 공판사실 ④ 판결 권리
이러한 한가

(3) 권리①- 수권판리 (조 133)

부도 수권판리에 해당하므로 권리 존속한다

(4) 권리② - 본안 심판 확정적 (조 133)

1) 문제점- 관할사권.

① 청구사 또는 ② 심판사 청 구자로 가는 관할사 문제

2) 관할 위배 - 심판사

관할에는 일4부대법원 모든 사건은 심판사로

직할사 관할 하였다

3) 권리 위배 - 청구사



~~[국제 제15조 불계명]으로 기본권 관철을 무시하게~~

하는 관관 가능성과 재판권 보장이라는 불계 있음다

[16조 계속]항 불만 심결 당사자로 권위 하므로

[항상 계속] 하기 않고 국가 통치자로 고려해하고

[결론] 상 항재 기권 불만심결 확정 여부는 관관한다

4) 검토와 사안

절차권 보장과 법적 안전성을 고려한 최근 제15조 제1항 하다.

2019. 01. 16 기권 재판권 계속 클 이로 아니다

(5) 제15조 제1항 (소국)

① 존속한 불로 심판 들 ② ^{통제권} ~~관할권~~ 사유에 개하여 ③
기권 불로 치르 리 2-3개 절차로 큰로 '판하'고 있다.

(6) 소결 - 재확인

일부 개리 원칙에 개관사실이 없다

3 항재② - 중불심판 여부 (소국)

(1) 제15조 6항. 민사소송법 259조 의거 하기

심판 불리 및 재판 동결을 위해 중불 심판 계속를
다시 개리하기 보한다

(2) 무권

① 당사자가 ② 중불심판 제기 ③ 계속을 불한다.

(3) 중불심판 계속 여부 (적국)

“심결 취소 소청”으로 중불심판의 연장선인 불심결

II 실문(2)

1 본체절 - 권리남용의 의미

권리자 부당행위와, 모순된 관계 형성, 실존의 원칙
충돌한 남용이 이에 해당한다.

2 관련 판례 - 권리남용 부정

본심판 확정된 판결을 존중하여 당사자
충돌사안에 해장이 없는 당장에 관련하여
남용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하였다.

3 각설

행정 소로 본사소와 달리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
가 없으면 충돌 사안이 필요하다.

4 결로

행정 소로 본사소와 달리 기간이 인정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
아니다.

5 결론 - 권리남용 인정

본심판 충돌 사건 아니므로 권리남용 아니다

문제3

1 실문(1) -1)

2.5

/ 잉크젯 프린터의 구동 방식 (13)(1) 보조부의 역할 (각각)주요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특징과 이점(2) 실시예 (각각)구동 방식에 따라 그 구조와 작동 원리가 다르다(3) 소결 - 잉크젯 인쇄구동 방식에 따라 인쇄가 다르다2 잉크젯 프린터의 구동 방식 (13)(1) 특징 설명 실시 (각각)주요 특징 설명 실시한다(2) 소결 (각각)구동 방식에 따라 그 구조와 작동 원리가 다르다(3) 입력 시 실시 (각각)구동 방식에 따라 그 구조와 작동 원리가 다르다(4) 소결 - 잉크젯 인쇄구동 방식에 따라 그 구조와 작동 원리가 다르다

3 실문(1) -2)

3

/ 잉크 구동 방식 (13)

(1) 잉크가 권용종인지 여부 (소극)

웨스제는 부품의 부를 끼기 간접침해 인정하면
중수 발생 범위가 부종에 확장하여 제한하므로 아님.

(2) 구매가 실시 여부 (소극)

구매는 실시 행위가 아님 (미국으로 3회 구매)

(3) 소결

잉크 구매로 간접 침해가 아님

2 잉크 관련 행위 (제한적 적극)

(1) 잉크 카트리지가 권용종 여부 (적극)

잉크 카트리는 잉크젯 프린터의 권용종에 해당 함

(2) 잉크 카트리의 생산 여부 (제한적 적극)

잉크가 잉크 카트리의 본질적 구성 요소에 따라
결론이 나뉘게 됨

(3) 소결 - 간접 침해 여부

미국 잉크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잉크 포함함.

3 잉크 카트리의 사용 행위 (소극) - 권용종이 아니므로

(1) 권용종인지 생산원리 (소극)

잉크 카트리의 사용은 권용종 생산이 아님

(2) 잉크젯 프린터 생산원리 (적극) - 권용종에 아님.

잉크 카트리의 사용은 권용종 생산으로 간접침해가 인정될지

아님

II 실문(가)

6

1 임고젯프린터 구입 (소3)(1) 보조 방식 소3 (소3)

다음 임고젯프린터 관련 특허권자가

(2) 실시 여부 (소3)

구매했을 경우 실시 일수가 아니라 (문 22 32 가외)

(3) 소결 - 각광 침해 사실

그런데 임고젯프린터 구매는 각광 침해 아니지

2 임고 카트리지를 교체한 사용 행위 (소3)(1) 권리 소결 여부 (소3)

(주) 경상권 권리자가 대체로 모든 경상권 개작을
치를 하는 일지

(2) 임고 카트리지를 교체한 사용 행위 (소3)

다음 임고젯프린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3) 소결 - 각광 침해 사실

그런데 임고젯프린터 구매는 각광 침해 일지

3 임고 카트리지를 구매 행위 (소3)(1) 구매했을 경우 권리 침해 여부 (소3)

임고 카트리지를 구매하는 구매했을 경우 한가

(2) 실시 여부 (소3)

II 실문(3)

5.5

1 링크 카트리지 판매 행위(1) 각종 침해 여부 (소극)

주요로 인해 침해상 일복 상 열어진 링크 카트리지를
 판매는 상당하게 이고 위법적인 생각할 게
 불공하고 있다

(2) 각종 침해 여부 (적극)1) 물권 침해 관련 침해 - 소극으로

물권 침해상 상등에 반 시문되는 물건은 이미 한가.

2) 권유권 여부 (적극)① 소유권 위법

특히 물권상 본복과 권리 침해하여 다른 돈과
없고 상계 교한 가능하고. 교제 예정 이라고 무너
권자가 따로 한에 한이하면 권을 권에 해조한다

② 사양지 정

링크 카트리지는 본래 정향 특정으로 하는 통상적 행위
그이 상양할 수 있는 것으로 상계 교제 되며, 소문 예정이고
무이 이므로 한에 한이거, 권유권이다

3) 권유권의 실시 여부 (적극)

링크 카트리지는 판매 되고 있는 것을 권유권 실시
해당한다.

(3) 소결 - 각종 침해 (각종침해 가능성 고려)

인코 카르리가 관세 행위에 관여 함에 따라

2 인코 카르리기 수입 행위

(1) 관세 관세 여부 (소)

생략할 게 보통 카르리 관세 행위 같은 다른 다른
수입 관세 아니기

(2) 관세 관세 여부 (국)

1) 국제적 소인 인정 여부 (소)

① 타법상 제1차

상호 방문 관세 상을 변경하도록 인정 하고 있다
국제적 방문 국제적 소인을 인정하고 있다

② 가중금 제1차

둘이 국가가 제1차에서 관세와가 이로 하를 전
국제적 소인 관세 행위

③ 관세 4안

미국 관세 없이 국가 관세 행위 관세 행위
미국 관세 행위 국가 관세 행위
인정 행위

② 관세 - 관세로 소인 여부 (소)

수입로 소인 행위 국가

(3) 관세 - 관세로

관세 행위 국가 관세 행위 국가

12

문제-4

I 설문(1)

~~1-합~~1 최저 보살액 제로 - 1283 5항

특허권가는 1283 5항에 따라 최저 보살액
한도 가능 하라

2 구별상 위상제 - 합리적 실지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실지로서 합리적 실지로
위상제 한도 가능 하라 한도

3 계산 방법

~~매출액~~ X 판매가격에 따른 실지로서 금액
판매액 X 판매 개수 X 실지로서

4 사안의 경우

80만원 X 5만개 X 실지로서 (5%)
= 20만원

5 결론 - 20만원

1283 5항은 20만원 한도 가능 하라

Ⅱ 설문 (2)

1 침해가 이익액 - 법 128조 4항

침해 배상액 양호 책임 정하는 침해
과 이익액으로 계산 한다.

2 법정 성실 배상제 - 후보

법 128조 4항에 법원 성실은 양호 책임 완화
를 위한 후보 규정 이므로 인제 들기 부담
가중 하라

3 특허권자 생산 능력 증명 통한 부담 배상제

특허권자 생산 능력 을 증한 증명을 하게 되니
침해 가의 이익 액보다 중은 편지 부담
가중 하라

4 계산 방법

(1) 후보 금액

침해 가의 이익 액으로 계산한다

판매 대수 x 이익 액

(2) 부담 금액 - 법 128조 1항 1호 9호.

특허권자의 배상액 이익액으로 계산 한다.

Max [(침해가 판매 대수 - 침해자 판매 대수) (생산량 - 판매량) x 이익액]



5 결론

(1) 총정액 - 75억

$$15\text{만원} \times 5\text{만 개} = 75\text{억}$$

(2) 부담액 - 60억

$$\text{Max}[(12\text{만} - 7\text{만} - 3\text{만})(5\text{만} - 0)] \times 20\text{만원} = 60\text{억}$$

II 실문(3)

1 배려권자 이익액 - 조 128조 1항

양도청구 권한은 본인 배려권자 유언에 의한
총액이 남는다.

2 계산 방법(1) 조 128조 1항 1호

$$\text{Max}[(\text{위탁가 양도수량} - \text{위탁가 청구 외 판매 보유수량}), \\ (\text{생산량} - \text{생산보유수량} - \text{양도수량})] \times \text{배려권자} \\ \text{이익액}$$

(2) 조 128조 1항 2호

$$(\text{위탁가 양도수량} - 1\text{호수량} - \text{위탁가 청구 외 판매 보유수량}) \\ \times \text{배려권자 이익액} \times \text{위탁가 손익} - \times \text{위탁가 판매액}$$

3 위탁 행위 지 판매 보유수량 제외

위탁자가 시장 가격으로 ~~비~~ 구매한 경우 제외



한끼 보가수한 양육이 국악 원화 된다.

4 사안의 경위

(1) 1호 금액 - 60억

$$Max[(5만 - 0), (12만 - 2만 - 11만)] \times 20만 = 60억$$

(2) 2호 금액 - 8억

$$(5만 - 3만 - 0) \times 80만 \times 5\% = 8억$$

(3) 함께 - 68억

68억 예상 한다.

(박수홍 크로싱. 상로기를 통해 기호까지)
고생 많으셨습시다.!. 화이팅입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 추가작성의 경우 []에 "계속"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1>

1. 선택 1번

3

16

1. 농업 - 法 332 조항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것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특허 공동발명이라서 문제된다.

2. 공동발명의 요건 (제31조)(1) 주요적 요건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실험협력해야 한다.(2) 객관적 요건기술상에서 공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3. 공동발명의 여부와 여부(1) 주요적 요건

단순히 아이디어만을 제시하거나 외부나 설비를 제공한 경우 "기술상에서 공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아서 공동발명이 아니다.

(2) 2. 2조의 경우

창상을 제시하거나 발명을 완성한 경우 공동발명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험협력"을 하지 아니므로 2. 2조 공동발명이 아니다.

II. 설문 2번

3.5

1. 내용 - 법 373 항

특허권은 24년권인 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특이
목적에 사용되거나 문제된다.

2. 특이 목적에 사용 여부 (23)

특이 목적에 특이적으로 권리를 이전할 사항이 없다.

3. 특이 목적에 사용(1) 목적에 사용 (제373항)

특허를 받은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자 또는 제3자는
양도인의 "특허" 기여도, 즉 사람의 양도, 출원인 제3인
사실에 비추어 판단한다.

(2) 사안1) 특이 목적

특이 목적에 기인한 타인의 아이디어를 개시하여
J와 계약함으로써 발명 X와 Y의 권리를 전기적으로
발명기 제도를 만드는 "특허"를 한다.

2) 특이 목적

특이 목적 "특이적으로"를 사용하여 특이 목적에
특이적으로 권리를 한다.

4 결론

특허를 받은 후 실시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III. 선택 3번

1. 논점 - 공표관계 법적성질

특허법은 공표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후의 법제에
유래한 성질은 가변 부속재산권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1:1로 관계를 가지는 문제된다.

2. 공표 관계 비록(1) 특허법 규정 문제

특허법은 공표 관계 비록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민법 262조 2항

민법 262조 2항은 공표관계는 동등하게 권리행사를
가능케 한다.

(3) 판례

민법 262조 2항은 특허법 99조 2항, 4항에 반하지
않고 특허법 특유의 반하지 않으므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4) 사안

공표권 주, 주체는 민법 262조 2항에 따라 1:1로
관계 비록을 가진다.

3. 결론

~~특허권은 1:1로 권리배분을 가진다.~~

IV. 결론 4번

6.5

1. 권리 주권이 적법한지

(1) 법 33조 1항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무권리의 권리 (실효)

양도인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까지도
한 때 양도인이 주권한 양수인 "대법 권리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무권리의 권리로 해당된다.

(3) 소결

양도인 권리 주권은 무권리의 권리로 부각된다.

2. IV의 대항가부(1) 법 38조 1항

주권한 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제3자와
대항한다.

(2) ~~무권리의 권의 승계인 제3자(제3자)~~

실효는 ~~주권한 권의 승계인 제3자~~ ^{제3자} 상사의 권리인 신분을
취함이고 무권리의 권의 승계인 제3자가 아니므로
대항이 가능하다.

(3) 사전

J은 재지를 이유로 대응할 수 없다.

3. 무권리와 관련된 권리

① 선출권리(법 36조 5항) ② 공개된
특허 공개식별권이 있고 특허된 선출의 권리는 관련
 발생하지는 않는다.

4. J의 성에 대한 조(1) 선출권 관련 하

J의 통상적 권리로서 J은 선출권으로 하여 공개된
 선출권 관련 하가 있다.

(2) 공개(비공개) 불가 (법 30조)

2018. 12. 17 이후로 1년 내에는 공개(비공개) 가능한
 바 J은 공개(비공개) 할 수 없다.

(3) 정당권리와 관련된 (법 35조)

J은 무권리와 관련된 이유로 무효심판으로 하여
 무효심판으로 하여 30일 이내에 권리로서 무권리와 관련된
 2018. 5. 28 일로 "~~선출권 선출권 관련 하~~
 존재하지 않는다.

(4) 특허권이전등록신청

특허청과 협박이 큰 경우 특허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특허권이전등록권

특허청과 협박이 되기 전에 특허권이전등록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특허청에 대한 권리(1) 제약청 의무불이행

특허청에 제약청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당징수배상청구

특허청에 부당징수를 청구할 수 있다.

<끝>

<문제-2>

I. 선택 1번

1. 일시불로 특허 부여

(1) 특허 (제 132조)

심판의 효력, 특허를 부여하기 위하여 불합격 결정 후
심판, 사선, 특허를 이의할 수 있다.

(2) 특허

~~① 가결된 특허는 불합격 결정 후 ① 무효심판~~

② 중안심판인 바 ② 동시심판의 여부 ③ 본
심판 특허심판이 문제된다.

(3) 불합격 특허 판정 (제 132조)

불합격 특허 판정원은 국인의 대표위원을 대표에게
참치
출처가 있는 심판에 대한 법원의 조정을 위하여
제기할 수 있고 제 132조 불합격 결정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국인의 대표위원을 대표에게
제기하므로 심판판정으로 변경한다.

(4) 동시심판, 동시 특허 판정

출처에 의거한 심판까지 불합격 가결 후 (제 132조 2항)
심판시까지 제정된 특허 이의를 제기한 동시심판,
사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5) 사본

1) 본인심결 특약사실

본인심결 특약사실은 특심판정규칙이므로 2019. 1. 16일
기준으로 위심결기 예전 판권이 대법원 제1부 중이므로
본인심결은 특약사실 인정된다.

2) 동일사실 판단

무효사실이 전혀 다른 이유로 취해진 경우 22조제2
동일사실의 핵심요리 유사 (제1항) 위심결은 전범,
22조 심판판결은 동일사실, 비판결로 상하하다.

3) 소결

일부사실의 동일사실 상하판결이 없다.

2. 중복심판금지 규정(1) 여의 권리 (제154조 8항)

상판의 문, 기록을 방화하기 가해 동일한 당사자
같은 심판은 이유로 중재할 수 없다.

(2) 요건

① 동일 당사자 ② 같은 심판 ③ 취한 제1부 중이므로
위, 22조 동일한 무효심판은 이 판판결이 존재한다.

(3) 중복제1부 중 판판결 (제1항)1) 만시소송법 259조 준용

만시소송법 259조의 중복소송을 준용하여 사실심판은

중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일시불러내 권함 위치의 차이

(일시불러내 권함위치에는 대개로 인문 위치의 위치제한
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판위로 변경된 것이다.

3) 일시불러내 키

(일시불러내 중복심판은 심판의 못, 위치를 바꾸어
원래 위치가 동일하나 위치가 다르다.

4) 소결

중복심판과 중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4) 사안

1) 판단령-심판시

후심판 심판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19. 1. 17일
최 심판이 상가상으로 판정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2) 소결

판정된 후의 2차 심판령을 중복심판이 아니다.

3. 결론

① 일시불러내권함도 아니다 ② 중복심판권함도 아니다.

I. 섯 번

3

1. 가판책 의의, 취지

가판책은 판권자 문서, 자료를 방화하기 위해 작성된 후드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2. 책의 2차 상품권리 권리남용인지

(1) 취지

판권자에게 판권은 작성된 책 가판책에 의해 편찬
하는 바 가판책이 작성된 후드에 책 2차 가판
후에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실

책의 2차 상품권리는 ~~판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가능한 논리 ①

책의 2차 상품권리는 판권자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이용한 저작물이 권리남용이다.

(4) 가능한 논리 ②

책의 방화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5) 결론

가판책은 권리남용은 저작 권리가 권리남용이다.

3. 결론

권리남용이 아니다.

<끝>



<문제-3>

16

I. 설문 1번-1

2.5

1. 논점- 法 942

특허권자는 임의로 특허방식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국외 행사가 침해받지 문제된다.

2. 국외 수입행위(1) 실시행위 여부

수입행위는 실시행위와 다르다 (法 23 3호 기록)

(2) 소멸

국외 수입행위는 침해가 아니다.

3. 국외 사용행위(1) 실시행위 여부

사용행위는 실시행위이다 (法 23 3호 기록)

(2) 소멸 적용 여부

국외 무권리자에게 구제할만한 소멸 되기 않는다.

(3) 가공품 실시인 경우

임의로 실시하지 않고 가공품생산은 배당이다.

4. 결론

국외 특허권도 각종 침해행위가 아니다.



II. 선택 1-2번 **2.5**

1. 특권 - 간접특권 (法 1212)

특권은 무체재산권이 바 침해권자를 침해로 간주한다.
특의 실체가 간접특권이 존재한다.

2. 무체재산권 장 (法 1212 12)

무체의 실체적인 사항은 무체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간접특권이.

3. 특의 직접특권

특의 직접특권은 손해배상이 아닌 바 간접특권이 아니다.

4. 특의 간접특권

특의 간접특권은 손해배상이 아닌 바 간접특권이 아니다.

5. 특의 실체특권

(1) 원인 배부

특권 무체재산권 바 손해배상 받는다.

(2) 실체 배부

특의 실체특권은 손해배상이 아닌 바 (法 1212 12)

6 결론

출원항목이 문제되더라도 가장 먼저 삭제된 바 지은 특허권을 간접침해하지 않는다.

II. 선택 2번.

5-5

1. 농업-법 제 91조

생물방제기 보존물은 시중에 가져와야 한다. 지은 특허를 직접침해하지 문제된다.

2. 지은 양귀포 관련 구입항목

구입항목은 삭제항목이 아니므로 직접침해가 부정된다.
(법 23 3단 기록)

3. 지은 양귀포 관련 사용항목

(1) 소재

무엇과 구조에 구입항목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2) 소재

사용항목은 삭제항목이 (법 23 3단 기록)

(3) 양귀포 소재

지은 양귀포에서 소재한다

(4) 소재

지은 사용항목은 직접침해 항목이다.

4. J의 양자드라이 기술

구입형가전 실시방식이 아니라 판매형가전 실시방식

5. J의 양자드라이 교체 및 사용

(1) 부품 교체 (교환)

부품 교체시 동업이 구입형가전 제품 사용 목적에
 수리형가전 부품 교체 비용 가산 한도 제한
생상형가전 특성 제한 한도 제한

(2) 소요비용

구입형가전 구입 비용 한도 제한

(3) 교체 (교환)

구입형가전 구입 비용 한도 제한, 이동형가전, 구입형가전
제한 한도 제한

(4) 사안

1) 동업이 구입형가전 (구입)

J의 양자드라이 구입형가전 동업이 구입 한도 제한
생상형가전

2) 소요

J의 양자드라이 교체 및 사용 구입형가전 구입 한도 제한

6. 결론

J의 양자드라이 구입형가전

JV. 섯 3번

5.5

1. 국채권 섯 적용여부 (섯)

무권리자에게 섯권한 바 국채권 섯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작성행위 여부

(1) 구입행위행위 행위 (섯)

(작성행위는 구입행위 권리가 기재되거나 구입행위 유무
작성행위에 대해 표명되어야 한다

(2) 사본

양식행위는 양식판본의 사본 바 작성행위가 아니다.

3. 간접행위 여부

(1) 의뢰, 제의 (섯 1212)

(특허권은 무차별적인 바 청구판본이 비용하여 청구
전달을 청구로 간주한다

(2) 물건발명의 경우 (섯 1213 제1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발명 섯 섯
간접행위이다.

(3) 카탈로그 제의 (섯)

특허권은 섯 섯 ① 발명권인 섯 섯 섯
② 다른 섯가 섯 섯 ③ 섯 섯 섯
④ 섯 섯 섯 섯 ⑤ 특허권 섯

2 부품을 따로 따로 판매하고 싶어야 한다.

(3) 사인

5

1) 부품의 경우, 타종류 부품에

① 양쪽의 프린터가서 잉크카트라는 부품의 경우를 예로 들어

② 특히 특허된 양쪽의 프린터만 사용 가능 잉크카트라는

수업과 같다.

2) 교체 여부

잉크카트라는 신제품인 필수적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3) 소셜

잉크카트라는 제품성과 관련된 기술 관련된다.

(4) 전통적 관습 (사회적)

사회통념상 통용되는 습관으로 경매, 승인, 실행인

다른 특성이 필수적 이름, 안정, 실행인 성

이름 가능하다.

4. 결론

즉 잉크카트라는 수입, 판매하는 직접하는 방법이나

"특수"에 의해 간접하는 방법이다.

<끝>

<문제-4>

11.5

I. 선택 번

1. 법- 法 1282

과거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액 계산(1) 法 1282 항 이의, 제1

특허권자 입증책임 면제를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다.

(2) 개량법

손해액의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손해액의 개량법이 인정된다.

(3) 계산방법

침해자의 판매수량 X 판매액 X 합리적인 손해율

(4) 사안

침해자의 판매수량 (5만) X 판매액 (80만원)
X 합리적인 손해율 (5%) = 20만원

3. 결론

20만원에 해당한다.

II. 선택 2번

1. ~~법 128조 4항~~ ~~의의, 권리~~ 2.5

특허권과 임용권인 인사를 위해 특허권 이익을
특허권이 손해배상권 인정.

2. 제1항

특허권의 양도권 X 특허권의 1회임 이익으로
특허권의 손해배상권 인정.

3. 4항

특허권의 양도권 (50%) X 특허권의 1회임 이익 (15%)
= 75%로 인정.

4. 결론

75%로 인정.

Ⅳ. 식은 3번

1. 法 1283 2항 2단

특허권의 양도권은 인허가 없이 특허권자의 양도행위
이행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法 1283 1항 제1문

(1) 제1항

$\min$ (특허권의 양도수량 - ~~실제판매수량~~,
생산물수량 - 실제판매수량) $\times$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특허권~~ ~~수량~~ 생산물수량

특이 2017년 5월, 6월 생산이 불가능했으므로

$$10,000 \times 10\text{개원인} = 10\text{만개원}$$

(3) 시인

특허권자의 단위 시인당 판매수량

$$\min \{ \text{특허권의 양도수량 (5만)} - \text{~~실제판매수량~~ (0)} \},$$

$$(\text{생산물수량 (10만)} - \text{실제판매수량 (1만)})$$

$$\times \text{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액 (20만원)}$$

$$= 3\text{만} \times 20\text{만}$$

$$= 60\text{억 이다.}$$

(4) 소결

法 1283 1항의 손해액은 60억이다.

3. 제 128조 2항 2단 계산

(1) 계산식

$$\left(\begin{array}{l} \text{클래리피 양도수량} - \text{특수량} - \text{선원선정불가수량} \\ \times \text{클래리피 판매액} \times \text{특리청인 선지정} \end{array} \right)$$

(2) 산인

$$\begin{aligned} & (\text{클래리피 양도수량 (5만)} - \text{특수량 (3만)} - \phi) \\ & \times \text{클래리피 판매액 (80만원)} \times \text{특리청인 선지정 (5\%)} \\ & = 2만 \times 80만원 \times 5\% \\ & = 80 \end{aligned}$$

4. 제 128조 2항 계산

$$10 (60\%) + 20 (80\%) = 68\% \text{이다.}$$

5. 계산

68%이다.

<끝>

환영!